

2019년도 제3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 공고

2019년도 제3회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계획을 「지방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10일

경상북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 296명

계급	직렬(직류)		선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
계			296명	
9급	시설	도시계획	7명	경주2, 영주1, 영천1, 상주1, 영덕1, 성주1
		일반토목	201명	경북도8, 포항17, 경주19, 김천6, 안동12, 구미3, 영주12, 영천5, 상주15, 문경6, 군위8, 의성10, 청송9, 영양4, 영덕10, 청도4, 고령4, 성주6, 칠곡7, 예천15, 봉화5, 울진11, 울릉5
		건축	61명	경북도1, 포항5, 경주4, 김천3, 안동5, 영천3, 상주3, 문경3, 의성3, 영양2, 영덕5, 성주5, 칠곡5, 예천4, 봉화4, 울진4, 울릉2
	방송통신	통신기술	27명	경북도4, 포항2, 경주3, 영주2, 상주1, 문경1, 경산3, 군위1, 영양2, 청도1, 성주1, 예천1, 봉화2, 울진3

2 시험과목

계급	직렬(직류)		시험과목	
9급	시설	도시계획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도시계획개론, 토지이용계획
		일반토목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건축계획, 건축구조
	방송통신	통신기술	필수(5)	국어, 영어, 한국사, 통신이론, 전자공학개론

3

시험방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 1) 배점 및 문항형식 : 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당 20문제 4지 선택형(문항당 1분 기준)
- 2)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 총득점이 높은 순

나. 제3차 시험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4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거주지 제한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합니다.

1.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9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거주지요건 확인 기준

1.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예시 : 「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광역시·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시행 1995.3.1.」 제9조에 따라 경상북도 달성군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편입되었으므로, 종전 경상북도 달성군에 거주한 기간은 **경상북도 거주기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3.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접수 및 취소기간	응시표 출력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일	합격자 발표
2019. 10. 14. ~ 10. 18. (취소마감일 : 10. 23.)	11. 22.이후	필기시험	11. 22.	12. 14.	12. 27.
		면접시험	12. 27.	'20. 1. 13. ~ 1. 15.	'20. 1. 22.

※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등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1) 접 수 처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
 - ※ 구체적인 접수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센터를 통해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접수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접수시간 : 접수기간 중 24시간(단, 시작일 09:00부터, 마감일 18:00까지)
- 3) 응시수수료(5,000원) 및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4)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규격 3.5cm × 4.5cm (해상도100dpi 이상)의 상반신 사진으로,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개인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배경사진 등은 사용불가)

나. 접수 시 유의사항

- 1)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임용예정기관(도, 시·군)을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 2) 선발방법은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하고, 최종합격 후 그 기관에 임용됩니다.
- 3)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4)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편의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1]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임용예정기관, 개인정보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자격증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수정 가능)
- 6)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7)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되지 않으며, 별도로 정한 기간에 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 상 :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

※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에서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목표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다만,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2차 시험에서 추가합격된 인원의 범위 내에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합격 시키는 것으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점 적용대상자 및 가산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마' 참고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치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취업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자녀
- 2)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3)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의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또는 시·군 사회복지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나'항목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아래의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자격분야	대상계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분야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2)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점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 소지자가 해당분야 시험에 응시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분	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 직렬(류)별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7의 4]에 의하며, **[붙임2] 【가산특전 및 가산대상 자격증 일람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가산특전 합산방법 및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10% 또는 5%) 또는 의사상자 등 가산점(5% 또는 3%), 공통적용 가산점(1% 또는 0.5%), 직렬별 적용 가산점(5% 또는 3%)은 각각 하나씩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2)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점과 직렬별 적용 가산점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 3)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http://local.gosi.go.kr>)에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는 가산비율, 보훈번호 / 의사상자 등은 가산비율, 의사상자 증서번호 입력
- 4) **OCR 답안지에는 별도의 가산표기란이 없으며,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입력된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및 자격증에 한하여 가산특전을 제공합니다.**
- 5) 자격증의 종류, 자격번호, 보훈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9 전출제한 임용예정기관

- 가. (임용 후) 5년 전출제한 :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나. (임용 후) 3년 전출제한 : 그 외 임용예정기관

10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응시표, 신분증,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을 지참하여 시험시작 **40분전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수정테이프(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나.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고(시험장소 공고일에 공고)하는 장소에서 실시됩니다.
- 라. 응시자격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 바.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사. 시험문제는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자체 출제하며, 모든 문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아.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 7일전까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시험관련 사항은 경상북도 인사과 인재채용팀(☎ 054-880-4583~7),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시험정보' - 질의/응답(Q&A)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